

## 보도자료

2010년 7월 8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  
가. 방송운영총괄과 김재영과장(2310) 나. 미디어기반정책과 장봉진과장(1360)  
[보고안건]  
가. 정책총괄과 양환정과장(2110)

# 2010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오전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

### [의결안건]

#### 가. KBS-2TV '부자의 탄생' 재심에 관한 건

- 「방송심의규정」 제46조(광고효과의 제한) 위반으로 「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방송법」 제10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KBS-2TV '부자의 탄생' 프로그램의 '시청자에 대한 사과' 제재조치 처분명령('10.5.19)에 대해 한국방송공사가 재심을 청구해 옴에 따라 이를 심의한 결과,
- KBS-2TV '부자의 탄생'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한 한국방송공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함

#### 원심 주요내용('10. 5. 19. 처분)

- 프로그램 : **KBS-2TV '부자의 탄생'** (2010.3.22(월), 3.23(화), 3.29(월), 3.30(화), 4.5(월), 4.6(화), 4.12(월), 21:55-23:10 방송)
- 제재조치 : **시청자에 대한 사과** (광고효과의 제한 조항 위반)
- 위반내용 :
  - 주인공이 여러 사업을 통해 성공해가는 모습을 그린 미니시리즈에서,
    - ① 협찬주(Angel-in-us Coffee)의 상호와 로고를 일부 변경(천사카페, Ainas커피)하여 반복적으로 노출하고,
    - ② "국내에서 로스팅하여 신선하다", "공기열로 볶아 타지 않고" 등 협찬주 업체가 홍보하는 특징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으며,
    - ③ 협찬주(외환카드, TONYMOLY 화장품)의 특정 상품명을 변경하여 노출하거나 효능·특장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함.

## [보고안건]

가.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(첨부 참조)

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'10.9.23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

-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,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관한 사항 등

※ 일정 :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(7월), 규제심사·위원회 의결·법제처심사(8월), 차관·국무회의(9월중)

※ 제40차 방송통신위원회 오후회의는 15시 30분 속개할 예정입니다.

<첨부>

## 「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」 제정안 주요내용

### ①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

○ 기본법은 방통위가 방송통신콘텐츠·광고 등을 포함하는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되, 방송통신콘텐츠와 광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(법 제8조)

- (방송통신콘텐츠)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관련, 방송사·IPTV사는 방통위,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부처간 역할 구분

#### <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의 범위(안 제2조) >

1. 방송통신콘텐츠의 법·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2. 방송통신콘텐츠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
3. 방송통신콘텐츠의 시청자 또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
4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 및 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」 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·유통, 인력양성, 장비·시설, 해외진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
(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2조제20호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지원사항은 제외한다)
5. 그 밖에 방송통신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·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

- (방송통신광고) 방통위가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

#### <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의 범위(안 제3조) >

1. 방송통신광고의 법·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2. 방송통신광고의 운영·편성·판매·진흥·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3. 방송통신광고의 시청자 또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
4.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광고 도입·보급을 위한 기술개발·표준화·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방송통신광고의 확산과 공익성·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

## ②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·운용

- (기금운용심의회)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중에서 지명(안 제24조)
  -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(안 제25조)
    - ※ 심의회 위원(10명 이내)은 방통위 위원장이 방통위 의결을 거쳐 임명(법 제27조)
  - 심의회는 기금의 방송분담금/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이 방송/통신분야 사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(안 제23조)
- (방송사 분담금) 지상파 및 종편·보도채널 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의 6%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(법 제25조)하되,
  - 방통위가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공공성·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징수율을 고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(안 제16조)
- (분담금 경감) 방송사의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100% 이상인 경우 50% 경감,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50% 이상인 경우 30% 경감(안 제20조)

## ③ 기타

- 경쟁상황평가, 방송통신 연구활동 지원, 남북방송통신교류위원회, 방송통신 기술기준·표준화, 방송통신재난관리 등의 사항은 기존 법령내용을 이관(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, 방송법 시행령 등)